

『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효율적 설치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(안 제4조)

다.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(안 제6조)

라.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~제8조)

마.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(안 제10조~제12조)

바. 공공조형물의 관리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동법 시행령」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,
 -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△예산낭비 △관리 부실 △도시미관 저해 △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 -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,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 이는 ‘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라’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지는 공공조형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